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각 시·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며,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(안 제59조의3, 제59조의4 신설).
- 지역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다른 시·도와 협업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을 설치하고,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59조의5 신설).
-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중앙 단위의 교육부장관 소속인 대학·지역 동반성장지원위원회를 두며,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두도록 함(안 제59조의6, 제59조의7, 제59조의9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·설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9조의3 및 안 제59조의4)

안 제59조의3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

안 제59조의4에서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·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, 전담기관의 지정·설립,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렇듯 개정안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되,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체계를 유지하되,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,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,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재위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고려할 사

항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법문을 보완한 수정의견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59조의3(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) ④ 그 밖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조례</u> 로 정한다.	제59조의3(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) ④ ----- ----- ----- --- <u>각 시·도의 행정적·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</u>
제59조의4(전담기관의 지정·설립 등)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·설립,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조례로 정한다</u> .	제59조의4(전담기관의 지정·설립 등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시·도의 행정적·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</u> .

2. 규제특례(안 제59조의10)

안 제59조의10제1항에서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발전의 지원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특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

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도록 하되, 다만,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에 따른 특례규정은 현행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대학 지원체계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로 확대함에 따라 제22조¹⁾ 등에 규정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내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, 「고등교육법」으로 규제특례 기능 등을 이관하여 신설하는 조문인바,

안 제59조의10제2항 단서의 “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교육부장관이 소관하여 처리한다.”는 규정은 현행 「지방대학 및

-
- 1)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(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)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(이하 “특화지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(이하 “특화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 2.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
 3.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
 4.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
 5.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(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)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-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,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규제의 사항을 상정하기 어려우며, 규제특례 인정의 특수성, 예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안 제59조의10제2항 단서의 규정을 삭제한 수정의견을 교육 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.

[illegible]

(전문위원 이 은 정)